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 확대〉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629호)

2026.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2216629)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3
1. 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 확대(안 제56조)	3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221662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도읍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2. 5.
3. 회 부 일 : 2025. 2.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항공기와 항공시설에 대한 조류충돌 예방강화가 대두되고 있음. 실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조류충돌로 인한 항공안전장애는 2,596건으로 항공안전장애 전체의 절반가량(4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특히, 항공기 조류충돌은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1,247건 발생하였으며, 5년 새 88%나 급증하였음.

이처럼 항공기 조류충돌의 위험이 여전히 심각한 가운데, 현행법상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조류유인시설’과 ‘조류보호구역’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불분명하여 조류예방 및 타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ICAO에서는 공항 표점으로부터 반경 13km 이내를 조류충돌 위험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위험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8km로 제한하고 있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류충돌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항 표점 반경 13km 이내의 범위 지역을 ‘조류유인시설 관리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조류충돌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56조제5항).

Ⅲ. 검토의견

1. 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 확대(안 제56조)

개정안은 ‘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을 신설하고, 조류유인시설 관리 범위를 현행 8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의 지역(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공항 표점에서 13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의 지역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6조(금지행위) ① ~ ④ (생략)	제56조(금지행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항공기가 이륙·착륙하는 방향의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지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오물처리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후단 신설>	⑤ —————위하여 공항 표점에서 13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의 지역을 “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는 —————환경————— —————. 설치금지 대상이 되는 “조류유인시설”의 종류에 대해서는 공항 표점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⑦ (생략)	⑥·⑦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검토의견

최근 「공항시설법」의 개정으로 공항운영자로 하여금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전담인력과 장비를 운용하도록 하고,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나 시설이 있는 토지·건축물 등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하며,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하는 등 12·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류충돌 예방체계를 강화하는 조치들을 신설하였음**(법률 제21037호, 2026.2.27. 시행).

다만, 조류의 주요 이동 경로나 서식지 등이 현행 공항시설 관리체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류 유입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조류충돌 예방체계를 보다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현행보다 더욱 확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 제5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항공기가 이륙·착륙하는 방향의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지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오물처리장 등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해서는 아니 되며, 그 범위는 동법 시행규칙에서 **공항 표점 8킬로미터 이내로** 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공항 표점에서의 거리에 따라 금지되는 환경이나 시설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서는 공항 표점 3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의 지역에서는 양돈장, 과수원, 잔디재배, 조류보호구역, 승마연습장, 식품가공공장 등을, 공항 표점 8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의 지역에서는 조류보호구역, 사냥금지구역 등을 만들거나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공항 주변 조류유인시설 관리에 관한 기준 】

공항시설법,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공항시설법」 제56조(금지행위) ⑤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항공기가 이륙·착륙하는 방향의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지역 등 <u>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u>에서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오물처리장 등 <u>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환경</u>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7조(금지행위 등) ⑥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는 해당 호에 따른 환경이나 시설을 만들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u>공항 표점에서 3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의 지역: 양돈장 및 과수원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이나 시설</u> 2. <u>공항 표점에서 8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의 지역: 조류보호구역, 사냥금지구역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이나 시설</u>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8조(공항주변의 부적합한 토지이용 방지) ③ 공항 주변 토지는 조류(야생동물) 유인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는 해당 호에 따른 환경이나 시설을 만들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u>공항 표점에서 3km 이내의 범위의 지역: 양돈장, 사과·배·감 과수원(다만, 사과·배·감 과수원 외의 과수를 재배하는 과수원의 경우에는 조류가 접근할 수 없도</u>

록 땅에 떨어진 과실에 대한 수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잔디재배, 조류 보호구역(「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조류를 보호할 목적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사냥금지구역, 승마연습장, 경마장, 야외극장, 드라이브인 음식점, 식품가공공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2. 공항 표점에서 8km 이내의 범위의 지역: 조류보호구역(「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조류를 보호할 목적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사냥금지구역,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현재 각 공항별 조류유인시설은 공항 표점에서 8km 이내 범위의 지역에서 관리되고 있음.

【 공항별 조류유인시설 현황 】

구분		계	인천	김포	제주	청주	양양	군산	원주	김해	대구	광주	울산	여수	무안	포항	사천
총계		115	6	29	-	6	15	6	8	2	4	2	8	4	12	3	10
3km 이내	계	96	5	28	-	5	15	6	6	1	-	-	5	3	12	1	9
	양돈장	6	-	-	-	-	-	-	2	-	-	-	-	1	3	-	-
	과수원	40	2	-	-	3	15	4	2	-	-	-	4	-	7	-	5
	잔디재배	1	-	-	-	-	-	-	-	-	-	-	-	-	1	-	-
	드라이브인 음식점	-	-	-	-	-	-	-	-	-	-	-	-	-	-	-	-
	식품가공공장	43	3	28	-	2	-	2	2	1	-	-	1	1	1	-	2
	승마연습장	2	-	-	-	-	-	-	-	-	-	-	-	1	-	1	-
	경마장	-	-	-	-	-	-	-	-	-	-	-	-	-	-	-	-
	야외극장	-	-	-	-	-	-	-	-	-	-	-	-	-	-	-	-
	조류보호구역	2	-	-	-	-	-	-	-	-	-	-	-	-	-	-	2
	사냥금지구역	-	-	-	-	-	-	-	-	-	-	-	-	-	-	-	-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	-	-	-	-	-	-	-	-	-	-	-	-	-	-	-
3~8km	계	19	1	1	-	1	-	-	2	1	4	2	3	1	-	2	1
	조류보호구역	10	1	-	-	-	-	-	-	-	3	-	3	1	-	2	-
	사냥금지구역	-	-	-	-	-	-	-	-	-	-	-	-	-	-	-	-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9	-	1	-	1	-	-	2	1	1	2	-	-	-	-	1

※자료 : 국토교통부

다만,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공항 반경 13km 이내에서 조류/야생동물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지역의 조류/야생동물의 이동 패턴이 항공교통에 위협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나,

【 조류충돌 위험관리구역 관련 ICAO 규정 】

[ICAO Doc 9137, Part 3 주요 내용]

4.7.2 While it is understood by leading bird/wildlife experts that an ARP might not always be centred exactly on the geographic centre of an aerodrome, typically a 13 km (or 7 NM) circle is considered a large enough area for an effective wildlife management plan. However, as necessary, action should also be taken when the bird/wildlife attractants are outside the 13 km circle if the airport operator has any influence on planning and development issues. (주요 조류/야생동물 전문가들은 공항 기준점(ARP)이 공항의 정확한 중심에 위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반경 13km(7NM) 이내의 구역이 효과적인 조류 및 야생동물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에 충분한 범위로 간주된다. 다만, 공항 운영자가 해당 지역 외부의 개발 및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추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9.2.6 Airports should establish a mechanism to ensure that they are informed of all bird/wildlife strikes reported on or near their airport. (공항은 공항과 공항 주변의 조류/야생동물 충돌 사고 보고를 모두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f) Airports should conduct an inventory of bird/wildlife attracting sites within a 13 km circle centred on the ARP,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sites close to the airfield and the approach and departure corridors. A basic risk assessment should be carried out to determine if the movement patterns of birds/wildlife attracted to these sites mean that they cause, or may cause, a risk to air traffic. If this is the case, options for bird/wildlife management at the site(s) concerned should be developed and a more detailed risk assessment performed to determine if it is possible and/or cost-effective to implement management processes at the site(s) concerned. This process should be repeated annually to identify new sites or changes in the risk levels produced by existing sites. (공항은 ARP를 중심으로 13km 반경 내에 있는 조류/야생동물 유인장소에 대한 목록을 작성해야 하며, 특히 활주로 및 접근/이륙로 인접 장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해당 지역에 모여드는 조류/야생동물의 이동 패턴이 항공교통에 위협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본적인 위험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만약 위험이 있다면 해당 지역에서의 조류/야생동물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보다 상세한 위험 평가를 실시하여 해당 지역에서 관리 방안을 시행하는 것이 실현 가능하고 비용적으로 효율적인지 판단해야 한다. 이 과정은

매년 반복하여 새로운 위험 지역을 파악하거나 기존 지역에서 발생하는 위험 수준의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

- g) Where national laws permit, airports, or airport authorities, should seek to have an input into planning decisions and land-use practices within a 13 km circle centred on the ARP for any development that may attract significant numbers of hazardous birds/wildlife. Such developments should be subjected to a similar risk assessment process as described above and changes sought, or the proposal opposed, if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bird/wildlife strike risk is likely to result.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공항 또는 공항 당국은 위험 조류/야생동물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개발사업에 대해 ARP를 중심으로 반경 13km 이내의 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개발사업은 위험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조류/야생동물 충돌 위험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변경을 요구하거나 해당 사업을 반대해야 한다.)

현행 공항시설법령에 따른 조류유인시설 관리 기준은 8km 이내 범위의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다 넓은 범위에서 조류충돌 위험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바 있으며,¹⁾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도 조류충돌 위험관리 범위는 공항 표점으로부터 13km 이내로 설정되고 관리되어야 하며, 이러한 범위 내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류충돌 예방 장치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²⁾

이에 개정안은 공항 표점으로부터 13km 이내의 범위를 ‘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조류유인시설 관리 범위를 8km에서 13km로 확대하여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해당 범위 내 공

1) 제22대국회 2025년도 국정감사 국토교통위원회(2025.10.27.)

2) 제22대국회, 제431회(임시회)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2026.1.15., 2026.1.22.)

항 주변의 조류충돌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조류유인시설 관리 구역 내 이미 조류가 서식하고 있던 조류서식지를 금지하는 것이 천연기념물 및 습지의 보존·관리 취지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관계부처 의견이 있으므로 개정 이전에 조류유인시설 관리 구역 내 조류보호구역 등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 조문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에 따르면 ‘공항 표점에서 13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의 지역을 “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와 같이 규정하여 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의 지정주체가 명시되어있지 않은데,

별도의 지정행위 없이 공항 표점에서 8km 이내의 범위에 대해 조류예방체계를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령체계와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은 별도의 지정행위 없이 법률에 의해 공항표점 13km 이내의 범위의 지역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항 표점에서 1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으로 하며…”와 같이 규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안 제56조제5항 후단에 따르면 ‘설치금지 대상이 되는 “조류유인시설”³⁾의 종류에 대해서는 공항 표점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 및 개정안에 “조류유인시설”에 대해 별도의 정의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개념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행 공항시설법령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조류유인시설”이란 오물처리장 등 조류(鳥類)를 유인하거나 서식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 또는 시설로서 조류충돌 위험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과 같이 ‘조류유인시설’의 개념을 새롭게 규정할 경우, ‘제56조제5항에 따른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나 시설’ 등 현행법 제56조제5항을 인용하고 있는 타 조문의 문언도 연계하여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음.

【 개정 필요한 연계조문 】

현행	개정안
제56조(금지행위) ① ~ ④ (생략) ⑤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항공기가 이륙·착륙하는 방향	제56조(금지행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하여 공항 표점에서 13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의

3) 또한 큰 따옴표(“ ”)는 제2조(정의)에서 사용되거나, (이하 “조류유인시설”이라 한다)와 같이 약칭으로 사용되므로 특정 용어를 정의하거나 명칭을 부여하는 경우 법령 본문에서 큰 따옴표(“ ”)를 사용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음.

현행	개정안
의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지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u>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오물처리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후단 신설></u>	지역을 “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는 ----- ----- -----환경----- ----- -----, 설치금지 대상이 되는 “조류유인시설”의 종류에 대해서는 <u>공항 표점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u>

「공항시설법」

제56조의4(협의매수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6조제5항에 따른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나 시설이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으며, 토지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다.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5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한 자

또한, ‘공항표점’은 시행규칙 및 국토교통부 고시4)에서 정의·사용되는 용어로 현행법에서는 별도로 정의된 바 없으므로 공항표점에 대한 개념적 정의도 함께 필요할 것으로 보임.

셋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역·지구등’이란 명칭에 관계 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을 받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의 토지로서,5)

4) 「공항안전운영기준」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2. “공항표점(Airport reference point)”이란 공항의 대표적인 지리적 위치를 나타내는 지점을 말한다.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지구등”이란 지역·지구·구역·권역·단지·도시·군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은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의 토지이므로 동법에 따른 ‘지역·지구등’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같은 법에 따라 지역·지구등은 별표에 규정된 지역·지구등 외에 신설을 제한하고 있으므로⁶⁾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별표에 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을 추가하여 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 신설 시 해당 구역을 토지이음시스템⁷⁾에 연계하고, 시설 설치자 대상 정보제공 및 관리구역 관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一團)의 토지(토지와 연결한 해수면으로서 토지와 같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해수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지역·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지역·지구등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 외에는 신설(지역·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1. 별표에 규정된 지역·지구등

2. 다른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지구등으로서 이 법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지구등
3.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지구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지역·지구등

7) 토지이용규제정보에 포함될 토지이용 규제사항을 작성 및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운영·관리하는 정보시스템

나. 관계기관 의견

1) 국토교통부 의견

국제기준에 맞춰 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을 지정하여 조류충돌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동의하며,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마련한 ‘항공안전 혁신방안’⁸⁾에 포함된 내용으로서 정책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법률개정이 필요함. 또한 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을 토지이용시스템에 연계·관리하여 시설 설치자 대상 정보제공 및 관리구역 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별표에 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2) 국가유산청 의견

이미 조류가 서식하고 있던 지역의 서식환경을 개선·복원하는 행위와 새롭게 조류를 유입시킬 수 있는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행위는 그 성격이 달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천연기념물의 보존·관리 체계와 충돌할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명확한 판단기준과 예외 조항들을 체계적으로 마련한 후 시행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8) ◆ 항공안전 혁신방안('25.4) 추진과제(조류충돌 예방활동 강화)

○ (관리구역 관리) 「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의 범위를 공항 반경 13km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공항시설법」 개정 추진)

* ICAO는 공항 반경 13km 이내 조류유인시설 등 관리를 권고

** (현행) 3km 이내 양돈장, 과수원 등, 8km 이내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등 설치 금지

3) 해양수산부 의견

항공기 조류충돌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국가 생태 네트워크의 핵심인 습지보호지역이 시설물로 취급되어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하위법령 제정 시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은 조류유인시설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80